

(한국유가공협회 공고 2021-10호 : 2021년 11월 1일)

제8차년도 한 호 FTA 관세율할당물량 1차 재배정 및 추천 세부요령

1. 근 거

한국유가공협회 공고 제2021-3호 “제8차년도 한·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배정 및 추천세부요령”

2. 재배정 품목 및 물량

가. 치즈 : 1,060톤

나. 조제분유 : 278톤

3. 품목별 적용 HSK 세번

가. 치즈

-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

0406.90.1000, 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
-단, 0406.90.1000은 이행 13년차부터,

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30.0000은

이행 18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(무관세 적용)

나. 조제분유

- 1901.10.1010, 1901.10.1090

- 단, 1901.10.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
(무관세 적용)

4. 적용기간 : 공고일 ~ 2021년 12월 31일 까지

5. 적용세율 : 0%

6. 재배정대상자 : 신규 및 제8차 한 호 FTA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

7. 재배정방법 : 선착순 배정(공고 후 익일 09:00~물량소진시 까지)

가. B/L,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

나.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정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,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

8. 추천 대상 원산지 : 호주

9. 추천서 교부
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(제2016-174호)에 의거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·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.

10. 추천서 유효기간

-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21.12.31일까지로 한다.

11. 추천신청서류

- (1) 한·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 신청서 1부
- (2) 선하증권 사본1부
- (3) 상업송장 사본 1부
- (4)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(5) 원산지 관련 서류 1부

12.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13. 추천접수처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- 추천신청방법 : E-mail (jmk@koreadia.or.kr) 만 접수

(사)한국유가공협회